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97
----------	-------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권영세 · 김용환 · 서일준
주호영 · 강대식 · 이인선
이 용 · 조경태 · 정진석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실시결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성능 보강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u>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u> <u>가한 결과</u>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 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실시결과</u> ----- ----- ----- ----- <u>다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u> <u>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u> <u>인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u> <u>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u> <u>고할 수 있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